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기획예산과	1

(2012. 5. 18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8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5월 11일

나. 의안번호 : 12-28

4. 관련근거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창의마일리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주요내용>

1. 안 제3조제2호에서 “공무원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제4호에서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구민 및 공무원”을 “국민”으로 용어를 개정함.
2. 제6조의2에서는 “ 구민생활”을 “주민생활”로 용어를 개정함.
3. 안 제18조에서는 “「특허법」”을 “「발명진흥법」”으로 개정함.
4. 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같은 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창의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연중 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을 위해 별표 3을 둠.
5. 안 제22조3을 신설하여 같은 조제1항에서는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, 같은 조제2항에서는 시상등급은 구민은

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공무원 및 부서는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시상금 지급기준을 위한 별표 4를 둬.

6.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누적된 창의마일리지 점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의마일리지 점수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둬.

[검토의견]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민제안규정」 및 「공무원제안규정」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또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46조(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)를 준용하여 창의마일리지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

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